

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속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4월 12일, 이춘우 의원 외 21명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

(2024년 4월 24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이춘우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전통발효식품은 최근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과학적인 효능이 검증되었으며, 전 세계 시장규모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수출규모도 증가하고 있음.
- 이에 전통발효식품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식문화로 보존·계승할 뿐만 아니라,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통한 산업화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

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(안 제5조)

- 전통발효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산업진흥위원회에 설립, 기능,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 ~ 안 제11조)
- 전통발효식품 산업을 위한 예산지원을 규정함(안 제12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진영)

가. 본 조례안은

-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,

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전통발효식품”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.
-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이 조례를 적용함을 규정함.
- 안 제4조는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“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”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, 기본방향과 목표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함.
- 안 제6조는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한

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안 제7조는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, 전통발효식품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사료됨.
-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전통발효식품에 관련된 정책의 심의·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, 기능 및 구성,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임.
- 안 제12조는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13조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14조는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부처,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, 대학교, 기업, 시·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.
- 안 제15조는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, 법인에 대한 포상규정을 명시함.

다. 종합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을 보존·계승하고, 나아가 발효식품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

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,

-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가 건강과 웰빙에 맞춰지면서 발효식품이 건강식품의 대세로 자리매김하며 발효식품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.

※ 전 세계 발효식품 시장규모는 2020년 총 319.8억 달러로,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6.2% 성장하여 2026년 말 599.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

- 국내에서도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발효 성분이 가져다주는 건강상의 이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발효식품의 시장규모가 확대되고,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음.

<국내 전통발효식품 생산액 추이>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16년 ~ 2020년	
						합계	비중
김치	1,033,434	1,032,399	1,119,642	1,178,899	2,010,779	6,375,153	70.7%
장류	568,223	499,438	543,082	449,693	577,875	2,638,311	29.3%
전체	1,601,657	1,531,837	1,662,724	1,628,592	2,588,654	9,013,464	100.0%

<국내 전통발효식품 수출액 추이>

(단위 : 천 달러, %)

구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16년 ~ 2020년	
						합계	비중
김치	78,900	81,393	97,456	104,992	144,511	507,252	71.4%
장류	35,549	35,917	40,363	41,989	49,339	203,157	28.6%
전체	114,449	117,310	137,819	146,981	193,850	710,409	100.0%

- 발효식품이 세계음식을 주도하고 있는 현 추세를 볼 때, 전통발효식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식품 산업의 발전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다만, 모든 식품에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조건임에 따라 전통발효식품에 관해서도 철저한 조사, 연구 및 제조 가이드라인을

마련해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.

- 관련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,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「없음」

6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 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